



경제스파이법의 영업비밀 정의에 대한 위헌 주장 사건의 항소심 사건

29

United States v. Krumrei, 258 F.3d 535 (2001)

01 서지 사항

국가 법원	미연방 제 6 순회 항소법원	사건번호	99-2500
판결 일자	2001.07.26	판결 결과	전부 기각
원고 (피항소인)	미합중국 (United States of America)		
피고 (항소인)	데이비드 티. 쿠름레이 (Krumrei)		
참조 법령	경제 스파이법 (Economic Espionage Act (“EEA”)), 18 U.S.C. § 1832(a)(2) ¹⁾		
참조 판례	United States v. Avant, 907 F.2d 623, 625 (6th Cir.1990); United States v. Hsu, 40 F.Supp.2d 623 (E.D.Pa.1999)		
영업비밀	합판 접촉면(laminate contact surface) 강화 코팅 공정		
키워드 (Keyword)	영업비밀, 코팅 공정, 조건부 소답 약정, 추상성		

02 사건 개요

윌슨아트 인터내셔널(Wilsonart International, Inc., 이하 ‘윌슨아트’)은 1990년대 중반 컬판(caul plate)의 합판 접촉면(laminate contact surface)에 강화 코팅을 입히는 새로운 공정을 개발했고, 박텍 코팅(Vactec Coating, Inc., 이하 ‘박텍’)이라는 회사와 계약하여 새로운 공정에 연구개발 및 실험에 조력하도록 하였다. 박텍의 소유자 로버트 아미스(Robert Amis)는 다시 페더럴 인더스트리얼 서비스(Federal Industrial Services, Inc.)라는 회사를 고용하여 공정 실험에 필요한 장비인 평면 매그네트론 스퍼터 코팅기(planar magnetron sputter coating machine) 준비를 돕도록 하였다. 피고는 페더럴 인더스트리얼 서비스의 종업원으로서 아미스가 코팅기를 준비하는 일을 도왔다.

윌슨아트는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상당한 금전과 노력을 투자하였고, 아미스와도 구두로 비밀유지에 합의한 후 서면으로 약정을 체결하였다. 아미스는 피고에게도 비밀성에 대해 알렸고, 피고는 시설 내에서 관찰을 하거나 아미스에게 질문을 하여 해당 비밀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다.

1) 원문 <http://www.law.cornell.edu/uscode/text/18/1832>

피고는 1996년 초 월슨아트의 경쟁사였던 CSR 리미티드(이하 'CSR')에 연락하여 CSR이 월슨아트의 코팅 공정을 개발하는 것을 자문하겠다고 제안하였고, CSR은 이를 월슨아트에게 알렸다. 월슨아트는 하와이 사설탐정인 켄 테일러(Ken Taylor)를 고용하여 CSR의 대표로 가장하여 피고에게 접근하도록 하였다. 피고는 해당 정보를 35만 달러에 판매하겠다고 제안하여 하와이에서 만났고, 미연방수사국(FBI)이 감시하고 있던 자리에서 피고는 월슨아트의 코팅 공정에 대한 정보를 공개했다.

피고는 경제스파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경제스파이법의 영업비밀의 정의가 추상적이라서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기소 각하를 요청했고, 지방법원은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피고는 연방형사소송법 제11조의 조건부 소답 약정(conditional plea agreement)²⁾에 따라 유죄를 주장하였으나, 소답 약정에 따라 피고의 각하 요청을 기각한 지방법원의 결정에 피고가 항소할 권리를 유보하였다.

본 사건은 피고가 경제스파이법의 영업비밀 정의가 추상적이어서 위헌이므로 기소가 각하되어야 한다는 청구를 기각한 지방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한 사건이다.

03 주요 쟁점

원 고	⇔	⇐	피 고
경제스파이법의 법문이 추상적이라고 판단될 수 있는 정황이 본 사건의 사실관계에 존재하지 않는다.			경제스파이법 제1832조 (3)(A)의 '합리적 보호수단'이 위헌적으로 추상적이어서 무엇이 영업비밀인지 판단할 수 없게 한다.
피고는 자신이 하는 행위가 금지된 행위임을 알았으므로, 본 법규는 위헌적으로 추상적이지 않다.			'합리적 보호수단'의 불명확성이 독단적이고 차별적인 법 집행으로 이어질 잠재성이 있다.

2) 미 연방 형사소송법 11(a)(2)에 규정된 피고의 소답 방식. 피고가 본안 심리 이전의 청구에 대한 기각 판단을 항소하겠다는 조건 하에 유죄를 주장하는 소답. 항소심에서 피고가 승소할 경우 조건부 유죄 소답을 철회할 수 있다. "a defendant may enter a conditional plea of guilty or nolo contendere, reserving in writing the right to have an appellate court review an adverse determination of a specified pretrial motion. A defendant who prevails on appeal may then withdraw the plea."

04 판결 요지

관련 판례에 따르면 단순히 법문 중에 ‘합리적’ 또는 ‘비합리적’이라는 단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추상적이라는 이유로 무효화되지 않는다. 해당 정보가 전매의 정보라는 사실과 자신의 행동이 위법함을 알고 있었다면 ‘합리적 보호수단’이 자신의 사건에 적용됨에 있어서 불명확성을 근거로 항변할 수 없다. 본 사건에서 피고는 해당 정보가 전매의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자백했다. 또한 피고가 월슨아트의 구체적인 보안 수단을 알고 있었는지와는 관계가 없다. 피고는 자신의 행위가 해당 법규가 규제하는 행위에 해당함을 스스로 알고 있었으므로 해당 법규가 추상적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지방법원의 판단을 유지한다.

05 Key Point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미국법에서도 형사법규가 추상적일 경우 헌법에 따라 무효화되며 그 기준은 해당 법규에서의 죄의 규정이 일반인들로 하여금 무엇이 금지된 것인지 이해할 수 있게 되어 있는지 또는 독단적이거나 차별적인 법 집행을 가능하게 하는가이다. 특히 종교, 언론, 표현의 자유는 가상의 사실에 대하여 추상성 여부를 심사하지만, 그 외의 자유와 관련된 법규의 추상성 심사는 해당 법규가 적용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해당 법규가 추상적이라는 점을 피고인이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만일 해당 행위가 위법함을 행위 당시 알았다면 그러한 주장을 할 수 없다.

미국에는 우리나라에는 없는 조건부 소담 약정(conditional plea agreement)라는 제도가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유죄를 인정하여 감형을 받으면서도 기각된 본안심리 전 청구에 대하여 항소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 만일 항소심에서 승소하면 유죄 인정을 철회할 수 있는 제도이다.